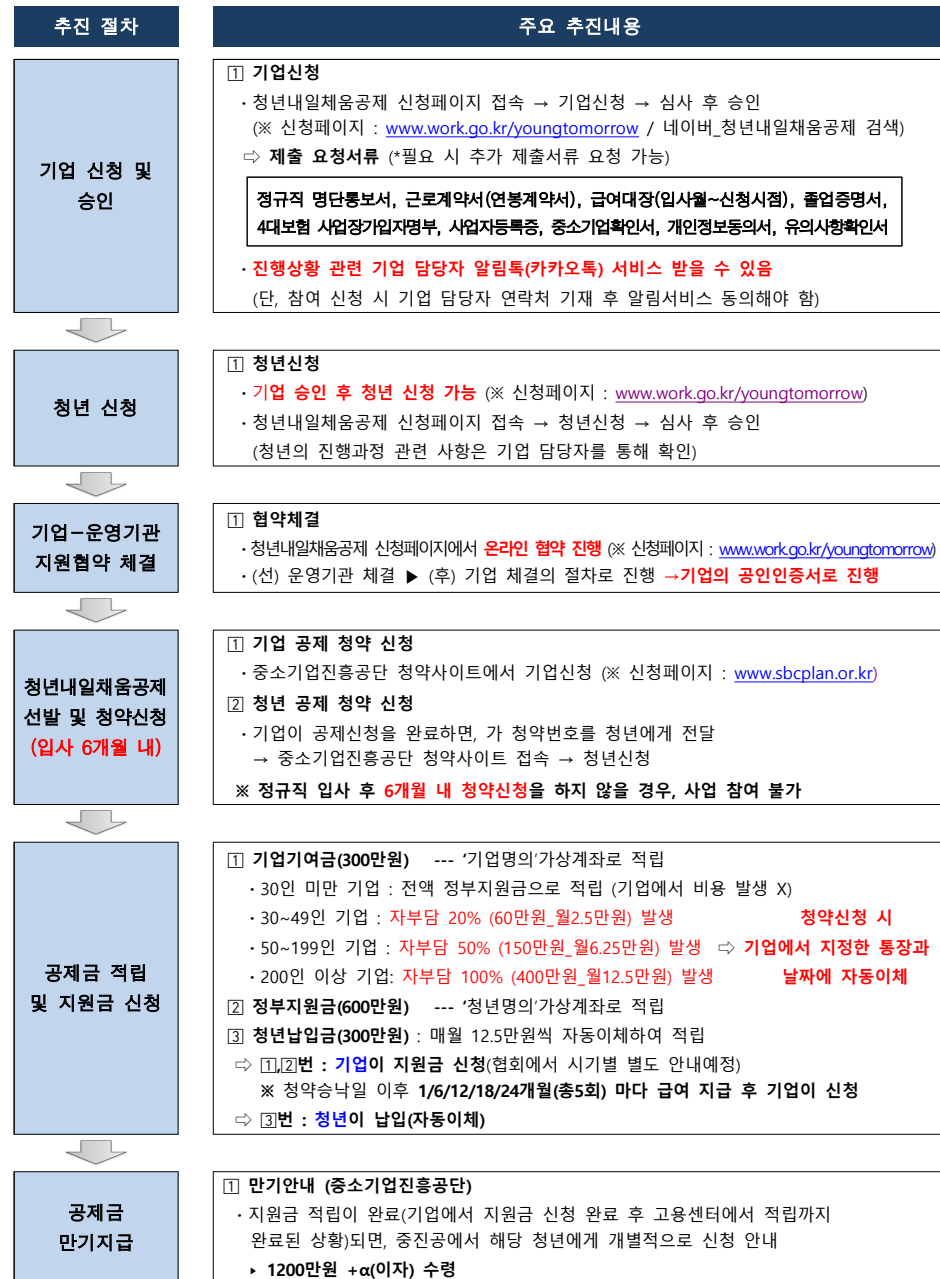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절차 안내

※ 본 내용은 **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1 기업 신청자격

신청자격(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소재기업)	
• 정규직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대표, 일용직, 공제가입 예정자 제외)인 중소기업 ※ 예외사항(피보험자수 5인 미만 참여가능 기업) ▶ 벤처확인기업, 고용보험 상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산업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 등 지침에서 정한 경우 참여가능	
제외대상	시행지침 16~19p 참고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였거나 채용하려는 기업 ②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ex. 대표 외 공제참여 대상자 1인만 근무하는 기업, 일용직제외) ④ 4대보험 취득일 이전에 4대보험 미가입 근무이력(비정규직 포함)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로 계약 한 경우) ⑤ 공제참여자의 이직 전 기업이 현재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관련사업주로 확인 * (관련사업주) 동일기업, 대표의 다른 회사, 자회사, 계열사, 기타 법적, 재정적으로 밀접한 관계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의거, 공제참여자가 정부가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중복참여를 금하고 있는 사업에 이중 참여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⑦ 기타 특장사유에 의한 참여제한 • 최저임금 미만 지급기업(주40시간 기준, 기본급 월 1,914,440원, ※수습기간 포함) • 기본급 : 추가근로수당, 비 고정상여, 복리후생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 • 월 급여총액 300만원 초과자는 사업 참여불가(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 주 30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및 재택 근무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재택근무 가능)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인위적 감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지원금 제한기간 내에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연속 참여한 사업장 중 공제가입자의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평균 2년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2 청년 신청자격

신청자격

- ① 정규직 입사일 기준 만 34세 미만(**87년 생일 이전**) 최종학교 졸업자 또는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 ② 정규직채용일(수습기간 시작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심사시간 예상해서 1개월전에는 신청)
- 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의 청년**
 - * 3개월 이하의 가입이력은 경력 검토 시 제외
 - ** **2021년 추경 이후부터 6개월 장기실직자 참여 불가**

제외대상

☞ 시행지침 9~12p 참고

- 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자**
 -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②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자
 - '재직 중인자' 또는 '신규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정규직채용 6개월 초과)
 -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
- ③ 최종학교* 졸업 후 **4대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청년**
 - * 학사 이하(석사, 박사,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제외)
- ④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청년**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3학년 2학기 과정종료),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능(입사시점에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중인 경우부터 허용)
- ⑤ **본인명의로 개인(보험설계사 포함)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청년**
 -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⑥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가 **개인사유로 자진 퇴사**했던 청년
- ⑦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인 청년
- ⑧ 현 직장과 이직 직전회사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사업주 관계인 경우(동일대표기업, 자회사, 대표 간 관계가 있는 사업장 등)**
 - 단, 이직 사이에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존재하면 사업 참여가능
- ⑨ 입사 전후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중복 참여(참여 중, 참여예정, 중도해지) 한 청년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이스터통장 등
- ⑩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상(연3,600만원) 수령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재택근무자
- ⑪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에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⑫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다단계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⑬ 참여기업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비정규직 포함)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참여자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참여가능)

☞ 시행지침 12~14p 참고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③ 희망사다리장학금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에 계속 재직 중인 청년
- ⑦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첨 2]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